

제412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월31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9)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5)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8)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1)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3)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3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2)
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5)
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4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54.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5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5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
5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5)
6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6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6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6)
6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4)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
7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7)
7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7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8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
8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4.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
8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요청안 5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5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9) 6
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4) 6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 6
9.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5) 15
1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8) 15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1) 15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3) 15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 15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16
19.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16
2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16
2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16
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16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16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16
2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16
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16
27.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16
28.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16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16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6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6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6
3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6
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6
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6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	19
3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2) …	19
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9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9
4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9
4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9
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5) …	19
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 …	20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0
4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0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	20
4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	20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8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8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8
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8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8
5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38
54.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	39
5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	40
5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 …	40
5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0
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0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5) …	42
6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	42
6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	42
6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	42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 …	42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6) …	42
6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4) …	42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6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6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7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	43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3

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3
7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	43
7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3
7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7)	43
7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47
7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7
7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7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48
8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	48
8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8
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8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84.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8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8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	48
8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14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 요구를 의결하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다음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과 이번 회의부터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행정실장입니다.

유항재·이혜미·남선우·김태현 법제사법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시3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1건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의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요청안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김도읍 다음으로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제4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까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오늘 의사일정 중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배부해 드린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과 같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15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51개 기관, 1222건입니다.

이상의 요구에 대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2024년 2월 5일 월요일 9시까지 자료제출 요구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 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79)

(14시3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6항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 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3314)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

9.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제10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대안)까지 4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9항 및 10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과학관법인으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정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

만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윤규 과기부2차관님 출석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토론하면서 각 부처 간에 이견이 많아서 협의안을 마련하셨어요.

마지막에 법원행정처에서 포괄위임입법 문제를 제기해서 의견을 받으셨는데 수용한 내용이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에 관련된 규정 아니겠어요, 논의한 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임시기준이 뭐니까?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서 별로 규정이 안 돼 있을 때 그러한 관련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단 기준을 정하는 게 임시기준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법령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기준을 설정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시기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을 동의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임시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완전히 모순되는데? 임시기준을 정한 것과 법원행정처와 합의된 새로운 것과는 모순이 돼 가지고 난 이해가 안 가던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 기존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런 입장에서 안을 성안을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가 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임시기준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하면 법체계상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령 등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적용될 때 좀 불분명하거나 의미의 해석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정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임시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법원행정처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문제는 단서조항을 넣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것은 임시기준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건 맞아요.

또 하나 조항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임시기준은 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하는 게 임시기준인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임시기준을 못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을 법원행정처에서 받으셨는데 수용을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용을 해 버리면 사실상 임시기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의미가 원래에 비해서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률이 과방위에서 논의된 게 한 1년여 이상 이 돼서……

○유상범 위원 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임시기준이 소위 말해서 법령에 정한 권리나 의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시기준이 새로운 권리관계나, 권리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건 명확하다고 보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라는 이것은 필요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가 임시기준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법령에 규정이 안 돼 있고 그 법령을 새롭게 만들

상황이 안 됐을 때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해서 만든 제도가 임시기준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그 임시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후단 부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는다는 게 내 의견이에요. 판단을 잘 못 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법원행정처가 이런 임시기준으로 뭔가 새로운 내용을 법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 거고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기준은 입법화할 수 없고 제도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기준을 만들고 임시기준을 적용하고 나서 추후에 제도화를 하거나 입법화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시기준으로 계속 가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임시기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맞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의 의견 내용은 임시기준을 사실상 이렇게 되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걸 좀 정리했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방금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원래 이 임시기준이라는 것이 본문에 규정을 해 놓은 걸 보면 새로운 서비스 출시·판매, 이용에 관한 법령 내용이 명확지 아니해서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임시로 설정한다 이런 본문 취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이 단서는 사실은 어떻

게 보면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왜 법원행정처에서 굳이 이 단서를 요구했는가? 그 내용이 법령에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 그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병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번에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단서 앞의 부분하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우리 가상융합서비스법이 최첨단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계나 또는 학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병철 위원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아까 이 단서조항을 넣은 취지는 임시로 어떤 기준을 정하라고 했더니 법에 규정해야 될 내용을 임시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주의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병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서조항은 없어도 되는 거지만 굳이 이 단서조항을 놔둔 이유는 이 분야가 워낙 새롭게 변화하고 아직도 업계에서나 학계에서 여기에 대한 일관된 어떤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임시기준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임시기준을 정하면서 당연히 기존 실정법에 있는 내용과 충돌되는 건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요, 차관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새로 법령에 정해서 규정해야 될 내용을 임시기준으로 정해 버리면 입법자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임시기준에서 새로운 것을 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미리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얼핏 보면 불필요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동어반복적으로 명확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우려하는 것은 임시기준을 통해서 기존의 실정법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것을 마음대로 바꿔 버린다든지 앞으로 또 향후에 법으로 규정해야 될

것을 임시로 정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서에서 못 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차관님이나 정부부처 의견이 중요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에서 이 단서 의견을 낸 게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신기술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게 크게 효용성이 손상돼 버립니다.

이 조항이 있게 되면 이 임시기준이라는 법조문을 설정한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동어반복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을 정부부처에서는 이것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법 자체의 본문의 취지가 상실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차관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게 있음으로써 임시기준에 대한 본문 조항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서가 있다고 해서 이 임시기준이라는 특이한 조문이 그 효용 가치가 유지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인지 그걸 차관님이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들 말씀 좀 드리면, 일단 2조 5호의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 큰 이견이 없고요. 단서조항 가운데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임시기준으로 안 되는 건 맞고 다만 그 맨 끝에 있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까지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임시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좀 과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으면 단서조항 중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만 금지가 되더라도 임시기준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도 살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하는 염려도 살리려고 한다면 단서 앞부분에는 이론이 없잖아요. 뒷부분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기준을 본문에서 굳이 둔 것이 이렇게 단서에서 못을 박아 버리면 임시기준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어진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병철 위원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염려하는 것은 그걸 거예요. 새로운 모든 것을 다 막는

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서 이 새로운 권리·의무의 내용을 임시로 창설하는 것. 그것도 지금 차관님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권리·의무 창설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에 이러한 임시기준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문 정도만 있더라도 취지는 충분히 반영해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철 위원 방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소병철 위원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을 집어넣어서 하면 조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차관님이 임시기준에서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민이 심각해져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은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임시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시다면 이 조문을 조금 수정해서 그 뜻을 명시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지금 법문상으로 봐도 임시기준의 정의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고요. 다만 걱정하는 부분들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임시기준이 침해하거나 변경하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단서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관님, 저는 이것 그냥 다 뒤도 될 것 같아요. 임시기준이라고 하는 게 법령을 해석하다 보니까 법령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할 때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고 적용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연히 새로운 법에 여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기준을 마련할 뿐이지 그 기준에 의해서 사실상이 법에서 본래 의도했던 내용을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의 본문 부분을 단서에서 명확하게 해 준 것뿐입니다. 새로운 내용 당연히 임시기준이라고 해서 법령의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에 관해서 불명확한 것 외에 그걸 해석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법문의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저는 한 번 더 짚어 준 것에 불과하지 임시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 기준 마련해서 사실상 통일된 기준 마련한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새로운 내용 들어갈, 그 법문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마치 새로운 내용을 창설하는 것처럼 그 기준을 마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이 정확하게……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차관님, 우리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 특히 유상범 위원님 문제 제기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본문 말미에 보면 2조 5호 본문 말미에 가면 ‘법 집행을 위하여 현행 법령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이래 가지고 결국 현행 법령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석 기준이?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본문 말미에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현행 법령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김승원 위원 전단만 넣고……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단서는 다 빼 버리고, 단서 다 빼 버리고.

○소병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임시기준이 자칫하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 돼 버리니까 여기 단서에서 임시기준의 범위를 좀 제한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법 집행을 위하여 임

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라고 하면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게 돼서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만들었는데 유상범 위원님은 단서 전단만 필요하다, 또 장동혁 위원님은 단서 전·후단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 단서 전단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장동혁 위원 저는 의견이 사실 단서 없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뭔가 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 집행을 위해서 그 기준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당연히…… 다만 그 이후에 단서의 내용을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 내용에 저는 당연히 포함돼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만’ 필요 없고……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단서조항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현행 법령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 기준을 마련한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저도 장동혁 위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5호의 본문의 적용 범위가 그런 것을 뜻한다, 단서의 내용을 포함해서 뜻한다라고 저도, 그건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한 해석인데 지금 ‘다만’ 이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단은 기존 법령 내용을 변경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후단은 기존 권리·의무에 없는 것을 새롭게 추가하지 말아라. 즉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서 양쪽을 다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이고.

그러면 차관님, 단서 두 번째 항—후단이지요—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이것에 관련되어서 임시기준 정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

까? 지금 임시기준을 정할 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새로운 의무, 이게 지금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하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상정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 그 후단은 새로운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이렇게……

○김승원 위원 새로운 내용 그러니까 앞에는 권리·의무의 내용이라고 했고, 뒤에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결국 권리·의무의 내용 아닙니까?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새로운 권리·의무는 아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없고요.

○김승원 위원 거기서도 해석이 엇갈리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아마 현재 생각하지 않는 또는 규율되지 않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이용관계나 이런 게 새로 또 규정이 돼야 될 걸로 예상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전단의 ‘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그 내용과 후단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 그 내용이 다 뜻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러니까 이제 앞에……

○김승원 위원 후단의 새로운 내용도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같은 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법률에 또 시행령에 의하지 않고 창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단서의 후단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라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임시기준을 하라는 거고

국민의 자유와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따르는 것이 좋겠는데 이 후단을 삭제해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이것을 삭제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건 없고요.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승원 위원 없으니까 단서 전단, 후단 다 수용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단서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과기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토론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차관님, 방금 답변 속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러니까 이 법문의 표현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서 권리·의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터비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꼭 창출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놓으려고 했더니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이런 경우에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소병철 위원 차관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요. 그래서 만약에 차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지금 단서조항이 앞뒤가 약간 문안이 차이가 있어요. 앞에는 권리·의무라고 단어를 표현했지만 뒷부분에는 권리·의무 단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우리 김승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이 새로운 내용은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뒷부분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 이 부분을 ‘권리·의무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관님 답변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종합해 가지고 단어를 정리해 본 건데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 이 단서조항은 실제로 임시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내용이 법령을 개폐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법원행정처의 우려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건데 사실은 단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라든지 새로운 권리·의무는 임시기준으로는 창출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표현되면 저희들은 명확히 그 뜻이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단서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어때요? 단서 앞부분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시니까 뒷부분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과연 뭐냐, 이것 한계가 있다. 뭐냐 하면 권리·의무가 아닌 내용은 얼마든지 임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 답변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서 수정 문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법원행정처안에서 단서를 빼고 우리 개정안 원문에서 ‘적용 여부,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임시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님.

참, 조정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만큼 법률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 된 논의 이후에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고 고민을 하는데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임시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만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뭘 어떻게 규정할지 알면 규정을 만드셨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산업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최소 규제가 맞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것이 우리의 헌법질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길을 깔아 주고 법률안에 있는 것만 해라라고 하는 소위 포지티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메타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2조 5호를 보면 ‘다만’ 이후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걸, 상위법을 넘을 수 없다 이걸 당연한 거고. 실은 없어도 되는 조항이고. 어떤 단서도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후는 다 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뭔가 있어야 된다면 ‘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지금 임시기준이라는 게 결국 현행 법령 해석에서 해석 기준을 행정청에서 일단 행정법규에 따른 해석 기준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기존 법령의 해석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명백하지요. 다만 여기서 권리·의무 창설만 법원행정처에서 강조하는데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법령 해석의 기준을 정할 때 이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을 정하는데 그건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술이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행정청에서 임시로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임시기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놓고 보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임시기준을 만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신기술에 있어서 임시기준을 정했고 그런데 정한 임시기준이 추후에 이것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럴 때 비로

소 우리가 입법적 규제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현행 법령과 저촉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부기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먼저 조정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 법 4조에 보면 우선허용 원칙이라고 대원칙이 이제 메타버스상에서는 일단 새로운 기술이고 해 보는 그런 원칙적인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취지는 법령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현재 의사와 일반인 간에는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는 원격의료가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 원격의료를 허용할 때 메타버스기술을 써서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의문이 들 수가 있을 소지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이러이러한 분야를 적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상정하는 게 이런 임시기준의 성격이고 임시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통해서 변경하거나 창설하는 것은 한계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나중에 당연히 불분명한 부분을 기준을 세우다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할 텐데 그것이 과연 새로운 내용을 만든 것인지 아닌지, 당연히 그 범규정 범위 내에서 기준을 세운 것인데도 그게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 그 해석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이 규정을 단서로 뒤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도 들어갈 필요 없나?

○장동혁 위원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

이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사실은 본문 규정에 따르면 그 자체가 현행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저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불명확할 경우에 한해서 임시기준을 주라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 규정은 중복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단서조항은.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의 우려도 우려지만 어차피 본문에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되거나 하면 입법으로 해결하든지……

○유상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 신기술 영역이지요.

○유상범 위원 보면 30조 1항을 수정해 가지고 임시기준을 적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법령의 제·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추가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되면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이견 없으시지요?

○송기현 위원 의견 있어도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모호하니까요, 임시기준이라는 게.

○조정훈 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도읍 저한테 질문 있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 임시기준 관련해서 이 내용과 함께 걱정이 한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5조 보시면 5조에 모두 다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잠시만요. 4조였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4조입니다.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4조에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제한하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 이 임시기준이 가장 큰 것일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우리 정부가 필요 없는 규제를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임시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정말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아니면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는 데 정부나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는 저희들로서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작업들을 행정부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보면 ‘임시기준은 메타버스서비스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런데 특정한 서비스가 나왔는데 관련 법령이 없다. 그러면 이 임시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못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임시기준이 없어도 서비스는 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법령에 금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서 메타버스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개발하시는 분들이 불분명해서 해석을 요구할 때 이런 임시기준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특정 서비스가, 정말 한번도 듣도 보도 못 한 서비스가 나와서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런데 임시기준 없이도 잘되고 있다. 그러면 이 임시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여기에 말한 대로 내용이, 그 특정 서비스를 규제할 또는 관리할 법령이 없다. 그러면 마치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가 나와서 막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반드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는든지 또는 실태조사……

○조정훈 위원 신청이라 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이런 메타버스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법령의 모호성이 있다 또는……

○조정훈 위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사업자들은 특정의 신서비스

를 할 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할 수 있는데……

○조정훈 위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렇지요. 그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면……

○조정훈 위원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행 법령 체계를 준수하는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혹시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들을, 의혹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임시기준의 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 정도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10호 법률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니까 원래 수정안은 과태료와 관련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다시 민주당 조승래 의원님이 또 안을 내서 가지고 70조(과태료) 조항을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또다시 수정안을 합의를 하셨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과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신 조승래 의원님께서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조항하고만 딱 관련이 돼서 시행령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그런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담당 전문위원님이 누구시지요?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입법 형식이 통상 과태료

를 부과하고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럴 경우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예외 규정을, 이렇게 법에다가 특정 법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한다 이렇게는 규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형식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이러한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동찬 저희는 일반적인 입법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관리법처럼 이렇게 특정 법률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결과, 부담능력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게 특정 법률을 명시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측면도 고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우리한테, 법사위에 송치가 되고 나서…… 송치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전문위원 박동찬 회부되고 난 이후에 수정의견으로……

○유상범 위원 (웃음)

아직도 직업 정신을 벗어나지를 못했네.

회부가 되고 나서 지금 그 의견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같은 취지를 우리가 입법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하여튼 입법례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례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 법률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가 다음에 이것 수정안을 만들어서 법체계나 자구가 형식에 맞도록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어떠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도 10항에 관해서 이 법률의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만약에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라고 하면 저는 이 범위가 특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받은 경우 같은 위반행위’라고 하면 마치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 말고도 이와 비슷한 것들은 다 면제하자는 취지인데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이 법률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그나저나 수정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과방위에서 수정의견이 왔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니까, 취지는 같은 것이니까 자구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전문위원 박동찬 예.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5)

1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8)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1)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3)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1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제1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대안)까지 7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에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정이 취소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3항, 14항, 15항, 17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2항, 16항 등 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오기웅 중기부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13항부터 15항까지 및 1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2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2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2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28.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18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35항 항공안전법 개정안(대안)까지 18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5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연속 지적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적소관청에 연속지적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업무를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연속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도면이나 임야도면의 과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 등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토지 등의 표시를 조사·측량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는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연속지적도 관리 규정을 법 제3장 제2절 '지적공부' 내에 신설하여 조문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3절 '토지의 이용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으로 조문을 이동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등 12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20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님, 백원국 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의사일정 22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 건물 등에 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랑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규정하면서 재정 지원 관련된 규정을 넣으셨는데 취약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까? 소규모 취약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어느 분이시지요? 2차관님이 하시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제가 담당인데요. 12조에 보시면요, 개정안 29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조정훈 위원 좀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가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대통령령으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니까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유상범 위원 아니,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의도 없이 그냥 대통령령에서, 행정부처에서 임의로 모든 기준을 정한다는 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입법례를 하는 경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규모 취약 건축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객관적 기준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부분, 재정 지원이 되는데 재정 추계는 해 봤습니까? 대상 건물은 얼마나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고 할 때는 ‘어린이나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쓰는 건축물이 얼마가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재정 지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대상 건축물은 얼마인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 건축물 중의 얼마 정도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 이것 하려면 결국 재정 추계가 필요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유상범 위원 지금 얼마나 예상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은 총 한 3만 385개 정도 됩니다. 노인이 1만 7000, 아동 6500개, 장애인 4100개 정도……

○유상범 위원 재정 추계는 안 해 보셨어요?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유상범 위원** 지금까지 기계설비가 필요하거나 유지관리하고 검사할 때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 부분 업무를 수행했거든요.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인데 이것 결국 재정 추계를 당연히 해 보셔야 되는데 기재부랑은 협의가 전혀 안 되신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개정한 이후에 예산 소요 이런 부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글썽요, 그렇게까지…… 그것을 전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법은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기재부와 이것 관련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당국과는 하위 법령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여러분이 지금…… 이 법이 뭐냐 하면 국가 재정이 반드시 투입되는 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의원한테 요구할 때는 ‘대상 규모는 얼마고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이와 같은 유지관리 또 성능 점검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협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할 때 기재부와 추가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에 예산을 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니, 이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재정 당국, 기재부와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 조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기재부와 의

견을 명확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34항은 안 합니까?

○**유상범 위원** 시간을 다 써서……

○**정점식 위원** 내가……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했는데 이 부분을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입법취지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무임승차한 분들도 포함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모든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무탄 발사 검용 가스발사총 이걸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고무탄 부분은 허용이 된 게 해양경찰, 경찰, 교도관, 군사경찰, 군교도관만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객열차 안에서 고무총을 발사하는 경우에 주변 사람들, 다른 여객한테 미칠 영향 이런 것 고려는 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가스발사총은 특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스분사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스분사기는 하고 있는데 가스분사기는 인근에 퍼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여객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타격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발사총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해경에서도 이전에 소위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무탄 발사를 했다가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여객이 이용하는 여객열차 안에서 고무탄을 사용할 경우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게 좀 검토가 돼야 될 요건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논의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조건으로 직무 장비의 사용 기준 또 안전 교육 또 안전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단 부령으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

게 대안이 나와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그것은 내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 교육과 안전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서 운용해서 조금 전과 같이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이 법 시행시기가 언제로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정점식 위원 6개월 만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도 교육을, 철도경찰이 대상이 되는데요, 철도경찰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21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이견은 해소됐나요, 전문위원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21항을 이렇게 살펴보니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걸…… 21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걸 법무부에서는 과태료, 초기 단계에서는 양벌규정이 없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 보니까 범조항이 양벌규정을 신설해서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벌금형,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인데—대부분은 그 운송사업자들이 법인이기 때문에—법인에 대해서 주 처벌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벌금정보다는 과태료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법무부에서는 제시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당초 법안에서 이게 벌금만도 있었고요, 양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법인에 국한되는 것 아니냐, 법인에 대한 벌금이면 실질적으로 과태료인데 과

태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또 상임위 전문위원의 의견도 같고 해서 그렇게 논의를 좀 하다가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은 국제적 탄소 문제고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양벌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벌금이 동일하게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온실가스 배출권법을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26항, 29항, 32항 및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 19항, 21항부터 25항까지, 27항, 28항, 30항, 31항 및 3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 및 조금 전에 의결한 22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진현환 차관님, 백원국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3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2)

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5)

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45.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4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15시3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3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부터 47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까지 1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40항, 45항부터 47항까지는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및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에 대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먼저 안 제75조의3제3항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 면제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모두 정하도록 한 문제가 있어 그 위임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안 제75조의3제5항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부정행위를 한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례와 체계를 맞추어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

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안 제9조의2제4항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 제9조의2제1항에서 ‘실종아동등에 관한’을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9조의2제4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찰청장 등이 자동차 제작자·판매자, 사고의 당사자 등 관계자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 제151조의2에 대해 운전면허증의 부정사용과 불법대여는 그 죄질이 상당 부분 유사하므로 법정형을 통일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청장 등이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안 제56조의4 및 제154조제10호에 대해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해당 정보를 열람·수집할 수 있게 될 경우 영장주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운전면허증 등 불법대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7항 등 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정점식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김광

용 자연재난실장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김조일 소방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5항 심사와 관련하여 최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위원님.

○조정훈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40항에 대해서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 계류된 게 아마 상한액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병철 간사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소병철 간사님 수정 제안안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 기부금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적당한지, 실효가 있을지…… 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1년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1년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정훈 위원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던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구체적인 숫자를 좀 제시해 주실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650억 정도가 지난해에……

○조정훈 위원 얼마를 기대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한 500억 이하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대.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걸 2000만 원으로 늘리면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500만 원을 내신 분이 한 2050명 정도 계십니다. 500만 원이다 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과 수정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어차피 이것 올려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500~2000 사이의 브래킷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개정안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

의견을 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합의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신속하게 지금 발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 기부금에 관련된 여러 기부금이 있는데 이 상한액이 500을 넘어서 2000까지 가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금 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정훈 위원 정치자금법이 2000이고 나머지는 한도가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한도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정치자금법도 한 개인이 2000을 할 수 있지만 한 특정 정치인에게는 500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작게는 4명, 많게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이게 2000만 원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과연 있는지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이것을 2000만 원까지 올려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 기부금 상한을 하면 다른 기부금도 동시에 다 올라갈 예정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다른 기부금들은 일단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부금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니더라도 기부금품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기부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별도로 규정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조정훈 위원 어떤 고민이 있으셨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 행안위에서 논의할 때는 기부금 상한을 없애는 것까지 논의를 하셨었는데요.

○조정훈 위원 아예 그냥 8조 3항을 없애 버리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상한을 두지 않는 논의도 있었습시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 정치자금법을 참조해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책을 확대할 때는

좀 객관적이고 시간을 두고 정책의, 특정 제도의 실효를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한 번만 이번에 전체회의에 계류를 요청드리고요. 어차피 2025년 1월 1일 시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고민하고 한번 관계기관과 상의할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 소위 군 지역을 비롯한 정말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법이 제정될 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사위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대폭 수정이 된 상태로 통과됐고 거의 지난 1년간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데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특히 지방을 지역구로 둔, 소규모 시군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향우회 등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체장이 나서서 소위 기부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은 우리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런 부분을 규제할 다른 방법은 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인데요.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홍보를 한다든지 모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래서 수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향우회 등에 참석해서 직접적으로 기부를 요구하는 이런 행위들은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공직선거법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직명으로 하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도 본인의 직함이나 직명이 들어가는 행위는 제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수정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병철 간사님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40항에 대한 수정사항 보고가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 의석에 다 배부가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되겠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점식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시행을 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처음 통과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첫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용으로 이걸 활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조정훈 위원님도 말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세 번째는 이 모금된 금액을 배분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지역 농촌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런 전체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께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수정안이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모금을 하도록 수정안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병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데 가 가지고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지금 수정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그걸 언급하셨는데요. 충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유인물 같은 데다가 ‘자치단체장 명의를 쓰지 말고 자치단체 명의를 써라’ 이런 뜻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삭제된 종전 조항들이 지방선거 등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조항의 정신 취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걸 대통령령 같은 데서 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위험성은 봉쇄를 합니다’ 이런 것인지 차관님, 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명의로만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우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향우회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장소입니다. 거기서 모금에 대한 홍보는 아마 하실 수는 있을 텐데요 다른 조항에서 지금 강요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향우회 가서 강요를 한다든지 하시면 다른 조항의 벌칙 조항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7조 조항이 광고, 홍보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독려는 되고 강요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6조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차관님,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보면 향우회 등의 사적 모임에 참석해 가지고 강요가 아닌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자치단체장이 나가서 자기 얼굴을 내세워 가지고 모금을 하는 건데 수정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본문에는 삭제가 되지만 대통령령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규정을 할 겁니다’ 이런 답변이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향우회 같은 데 가 가지고 시장이 자기 얼굴 내세워 가지고 가서, 지금 뭐 강요를 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사실 차관님. 향우회 가 가지고 ‘우리 고향에 돈이 필요합니다. 기부 좀 해 주십시오’ 이 경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장이 사실은 모금 활동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령에는 이 3호 같은 경우 삭제되지만 이 취지는 그대로 대통령령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일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런 취지입니다, 간사님.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먼저 하시지요. 먼저 손드셨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도 법안 개정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께서 여러 우려나 고민이 좀 더 있으신 것은 같은데 이게 또 우리가 자칫 우리 국회 좀 있으면 문 닫는다 이 생각들을 하니까 많이 고민을 해서 우려를 좀 덜어 놓은 상태에서 왔으니까 계류하지 말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고향이 전라북도 장수군이라서 고향사랑기부를 적은 돈입니다만 했고 답례품도 오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고향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의견들을 모으고 하는 것을 보면서 1년이지만 나름 긍정적인 영향들이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례품 등 때문에 지역 특산물 등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나은 이런 영향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고 있는 선거법, 선거에 악용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당 지역의 현명한 유권자들이 잘 아실 건데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잘 담아 내시고 특히나 선관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를 선관위에서도 촘촘하게 감시하고 주의 주도록 하고 계도 작업을 잘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떤지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박법계 위원님, 동일 법안?

○박법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점식 위원님, 잠깐만요.

조정훈 위원님, 어떻습니까? 계속 전체회의 계류……

○박법계 위원 좋은 법이야.

○위원장대리 정점식 위원님들, 특히 지방을 지역구로 두신 위원님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한 번만 더 양보를……

○박법계 위원 의견 좀 얘기하고……

○위원장대리 정점식 예, 박법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소병철 간사님 우려도 십분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이 법안 수정안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하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이 서울에 있는 충청향우회에 가서, 거기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좀 해주십시오’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등 말 등인데 선거를 의식해서 개인 자치단체장의 입을 막는다 이러면 이것 후퇴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공법인이지 않아요. 단체와 대표자의 법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문은 대전 서구라고 딱 해서 보내는데 서구의 기관 대표는 누구예요? 서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장 입은 못 열게 하고 그러면 말로 하는 것은 불가능, 그렇잖아요? 어떻게, 청장 대신 누가 합니까? 그러면 부청장이 하면 괜찮아요? 부시장이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문서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대전시 서구청장 직인 딱 찍어서 보내면 이름 없이도 그 주민들이 서구청장이 누구인 것은 다 아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저는 대통령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거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 내지는 답례 조항을 어떻게 악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선거법에서 달리 어떻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액수는 5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지요. 이것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얼마나 지역에, 대전 서구만 해도 굉장히 잘사는 동네인데, 선진화된 동네인데 소멸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 우리 행안부가 전통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들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정부와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자칫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세부조항을 뭘 어떻게 담는다 그래서 글쎄, 대표자와 기관 법리를 깊이 아무리 따져 봐도…… 그러면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만 할 수 있는, 국장만…… 그래 가지고 말발이 먹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여야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정말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히 소멸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자율적 재정 지원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이 수정안대로라도 오늘 반드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조정훈 위원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도 박범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이 이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구두로 하는 것도 지금 대통령령에 담겠다는 것인데 이 제도의 취지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열심히 가서 홍보하고 많은 기부금을 모은 자치단체장은 주민들한테 정말 열심히 일한 자치단체장으로 평가받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이 제도를, 그리고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자치단체장이 나가서 열심히 홍보해도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면서 군수든 이런 분들이 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군수 누구누구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고 모금이 많이 모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생각한다면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하라고 반말로 하셔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제 입장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 좋아하는 고향에 기부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담되는 것은 이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지요? 준조세가 집행되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것. 맞지요? 국가가 소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지는 않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을 포기함으로써 준조세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아까 500억까지 가신다고 했잖아요. 20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예상액이 얼마라 그러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모금은 650억이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650억이고 이게 2000만 원이 되면 얼마까지 예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것보다는 많이 늘 것으로……

○**조정훈 위원** 자, 그러면 500에서 2000 하면 2배라고 치면, 한 1000억이라고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준조세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

○**조정훈 위원** 세액공제해 주고 소득공제해 주면 포기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

○**조정훈 위원** 계산 안 해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기에 이번에 한 650억……

○**조정훈 위원**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대략 해 봤습니다.

○**조정훈 위원**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650억 중 한 98% 정도는 10만 원 이하 분들이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98%면 거의 650억 세액공제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거의 한 500억에서 400억 정도 사이가 세액공제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맞습니다. 이게 준조세인 거예요. 이게 650억짜리 재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민간인이 돈을 내서 자기 고향에 기부한다가 아니라, 저는 막말로 세액공제 빼자 그러면 기부 상한액 없애자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자체가 운영되지 않으니깐……

○**박범계 위원** 검증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조정훈 위원** 예, 이것은 검증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600억, 앞으로 이게 2000만

원이 되면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한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다 2000만 원 한다면 그러면 이게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의 예산 프로그램인데 기재부 입장도 없고. 마치 이게 개인이 사적으로 자기 고향에 돈을 주는데 왜 막나 이렇게 논리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고향 사랑하면 세액공제 없이 하셔야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좋은 게…… 저도 저 혼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준조세거든요. 650억 원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는 아직도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한 번쯤은 기재부의 의견도 그리고 과연 이게 500에서 2000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세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받아야 될 예산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점식** 소병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상범 위원님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말씀 속에서 약간 그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 소멸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논점은 사실 별개로, 오늘 새롭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금 방법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이 모금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성화한다는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행안부도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병철 위원** 다만 모금하는 과정에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강요를 하나 예로 드셨지요, 모금하는 데 부작용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모금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금액도 올리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더라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부분을 행안부에서 대통령령 만들 때 정치하게 살펴 주시라 그런 취지라는 것으로 차관님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해 보니까 전남의 지자체들의 경우에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치단체장님들이 말씀한다는 것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해서 모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금액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높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재정이 어려운 곳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글썄요. 그래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분은 말씀 들어 보면 한 분도 안 계시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다른 것들을 다 논의를 배제해 버리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도 좀 늘리자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문제로 지금 수정안을 내놨던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병철 위원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조정훈 위원님 말씀한 부분 빼고 나머지 논점들은 행안부에서 모금 방법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정치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특히 우리 전남 지역 지자체장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대신 세액공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께서 사실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답변이 명확하게 된다면 논의를 정리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훈 위원님 답변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차관님 답변이 조금 명쾌하지가 않으셔서 그랬는데요. 혹시 옆에 참모진이 그 보완을

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지금 유상범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유 위원님 안 하십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점식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조정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공공의 가치나 이익을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전체 세수로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돈이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세수가 확보되는 측면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조세를 감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소멸해 가는 지역들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더 큰 가치들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다른 조세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큰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박범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점식 간단하게 하시지요. 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 가지고……

○박범계 위원 아니, 굉장히 철학적 기초가 달라서 얘기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는 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현 정부의 기재부 입장은…… 우리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조세감면 특혜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고개를 끄덕임)

○**박범계 위원** 특히 R&D 개발 같은 것을 명분으로 하는 조세감면 특례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아까 예상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400억~500억 정도 추정합니다.

○**박범계 위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 올해 예산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이 세액공제로 인해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것, 초부자 감세를 걱정을 해야 될 문제지 아까 장동혁 위원님…… 나갔네, 좋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소멸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뭔가 숨통을 터주기 위한, 자그마한 모세혈관을 살려서 나름대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나온 제도잖아요. 어제오늘의 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준조세라는 측면으로 왜 감면하려고 하느냐 그걸 걱정하는 것은 저하고 철학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감대는 다 돼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훈 위원님이 더 반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장동혁 위원님도 생각이 같고 아마 유상범 위원님도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로 인한 어떤 세액공제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거꾸로 이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 또 하나는 바로 조특법을 개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수미상관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조 위원님.

○**유상범 위원** 조 위원,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조정훈 위원** 아마 좋아하실 발언일 텐데 기다리라고 하시면……

○**위원장대리 정점식** 좋아하실 발언이면 일단 기다렸다가, 유 위원님 나중에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차관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법

사위에서 정말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제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금세예요. 그걸 하는데, 이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도덕적 문제가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세금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그때 제가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이 기부금법의 필요성 얘기하고 그러면서 타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무원들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동원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자칫하면 소멸위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어떠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 문제를 결코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자치단체장들이 절대 공무원을 동원할 수는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살아 있지요? 그대로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상범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사실은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처음에 한 기부금 모금액의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관님 아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니, 저는 기억이……

○**유상범 위원** 1조 200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기부금을 빙자한 조세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야 위원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사실은 일인당 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고.

지난 1년 동안 저도 지역에서 기부금 모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우려했던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경쟁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동원 이런 이슈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자칫 농협이 일방적으로 모든 답례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지난번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농협이 담당하는 부분이 또 많지를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재개정이 들어왔을 때 아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결국은 그 보고를 듣고 전적으로 다시 한번 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액이 늘어나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세 조세의 기능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정에서 충실한 통제 또 자치단체의 과잉된 어떤 독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규정을 주셔서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철학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가 여러 가지 항이 있고 아마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달달달달 외웠었는데요 지금은 다 못 외웁니다. 대기업에 가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 가는 것도 있고 기본 세액공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의 정반대 효과가 납니다, 위원님.

2000만 원의 기부를 한 사람이 받는 세액공제액은 1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의 수십 배에 달할 겁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소득자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1년에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의 세액공제는 역진적이라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또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초부자 감세의 정확한 효과가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향사랑 그리고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자라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쭙보고 싶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별 금액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가장 많이 기부금을 유치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남 담양군이 22억 원 유치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22억 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리고 전남 지역, 경북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인구소멸지역……

○조정훈 위원 그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장이 열심히 모금한 겁니다, 그 동네 출신 부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복합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노력도 있었을 거고 아마 답례품을 선호해서 하셨던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조정훈 위원 답례품이 매력적이어서 기부금을 많이 했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인 홍보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회에 이 법안이 못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인지는 하고 있고요. 또 저를 제외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것하고 지역화폐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지역화폐도 반대합니다. 우리 경제를 더 분절화시키고 경제운용의 효율성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전에도 지역화폐는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소멸지역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갖고 운영하면 반드시 역진적인 효과가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차라리 조세 제도로, 정책으로 소멸이 되는 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니 저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조수진 위원 짧게 할게요.

차관님, 이 제도가 작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수진 위원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모금액이 좀 많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에 모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양 등 전남에서 굉장히 많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저도 전북 세 곳하고 순천을 비롯해서 전남 세 곳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담레품이 다 농축산물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면 담레품이 농축산물이면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도 진작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조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조수진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금 한도액을 늘리자, 지금 그래서 도입이 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한 16.5% 정도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2000만 원 늘려도 그 공제 퍼센티지는 같은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거의 97~98%는 10만 원 이하에서 기부를 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수익금을 그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용을 하나요, 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취약계층 또 주민 복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 문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도 보완하면서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이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지금 우리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 연휴 앞두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 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시지요. 조정훈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 남기시고 통과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 주셨으니까요.

○소병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만하시지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이 항…… 다른 법률 말입니까?

○소병철 위원 아니요, 지금 농촌사랑 사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전남 쪽 분들이 제일로 목매달아 하시는데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말씀 안 하셔서 그것 하나 마무리……

○위원장 김도읍 예, 간단하게 말씀 좀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야당 간사로서도 간략히 드리고요.

다만 지금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안부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도 시행하고 나서 오래 안 됐지만 개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부를 활발하게 하고 소멸지역에 이 기부금의 혜택을 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조 위원님이나 저나, 다음번에 저희가 이걸 좀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또 고치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다른 법률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경찰청장님 담당이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유상범 위원** 지금 법무부에서 이 법률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네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유상범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

아직 조율이 다 안 되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조율보다는 이게 아마 1년에 실종신고가 대략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감염병예방법이라든지 사실 이런 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영장주의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관계기관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 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다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견 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 이견 조정이 다 됐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한석현**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이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검토의견에다가 반영을 하고 주서본에 다 반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추가로 온 의견은 이미 저희가 주서본에 반영된 내용인데 법무부에서 의견이 와서 결과적으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유상범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정리가 돼서 주서본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주서본이 아니라 여기 지금 깔려 있습니다. 아, 주서본에 반영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깔려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깔려 있었으면 묻지를 않지.

○**전문위원 한석현** 예, 주서본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주서가 돼 있는 내용을 법무부가 그것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견 제시한 거고 그것은 이미 주서본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 간에 이견 정리됐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다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전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만 한정하여 돼 있는 것을 ‘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이 조항을 넣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9조 제4항을 보면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서가 주체가 돼 있는데 이런 주체는 있을 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9조에도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관서와 관서에 종사하거나’ 이래서 파기의 주체를 경찰관서로 지금 현행 법률 9조 4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찰관서의 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9조 4항이 아마 입법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파기 의무의 주체를 관련 법들을 찾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장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서처럼 그 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관련 입법례도 있었는데 다수 입법례는 기관을 특정하는 입법례가 좀 더 많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처벌조항으로 넘어가면 달라지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파기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고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긴,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처벌조항의 인용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경찰관서로 해 가지고 목적 외 용도 이용의 주체를 관서의 장으로 바꿔야지.

○**전문위원 한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

무조항하고 지금 처벌조항하고 딱 정합성이 있지는 않는데 처벌조항에서 양벌규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관서 내의 행위자가 목적 외 사용을 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으로……

○정점식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소위 현행법 9조의 앞 조항에서는 자료 제공의 주체를 관서의 장으로 이렇게 해 놔는데 소위 금지조항에서는 경찰관서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했다면 이 9조 4항도 같이 수정을 해야 정합성이 맞는 겁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법무부는 지금 9조 4항……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9조 4항을 인용을 해서 내가 9조 4항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선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전문위원 한석현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정보의 이용 주체는 경찰관서에 있는 경찰공무원들, 자연인일 거거든요.

○정점식 위원 그런데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뒷 조항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그렇다면 목적 외 이용 금지 대상을 경찰관서로 이렇게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관서의 장 또는 관서 소속 경찰관들, 직원들이 이렇게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야지 경찰관서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 의견은 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특례에 대한 적용례를 소위 이미 퇴직한 전임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칙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게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

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는 처음에 드렸던 의견은 초대 본부장 당시 때의 입법적인 어떤 불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원칙에는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소급효를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게 전체적인 법 원칙에 어긋나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빼는 게 맞다고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점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고 제가 다른 부분 관련해서 시간 더……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경찰복지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경찰병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한경 국장님, 소위 경찰복지법 개정안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는 ‘국가재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을 신설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국가재정법 전체 체계와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38조 제1항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38조라고 해서 1, 2항을 포괄하는 그런 조항도 두고 있고 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부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복지법 개정안 대안을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그러면 이 복지법 대안에서 본문 8조의3제3항을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을 달고 우리 법사위 부대의견으로 ‘이 법 8조의3에 따라 경찰병원을 신규로 설립하면서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일차적으로

행안위 통과된 경찰복지법 관련된 내용에서 경찰병원 신설에 관련된 예타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는 거고요. 경찰병원의 신설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적 판단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대의견의 주안 사항은 저희가 예타제도 안에 신속예타 제도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타는 통상 철도의 경우에는 12개월, 나머지 건설사업에는 9개월을 택하고 있는데 조속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신속예타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철도는 9개월……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철도는 9개월, 일반사업은 6개월로 하는 신속예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에 주어진 내용은 저희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운용지침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한다’ 이 조항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 3항에 있는 소위 원칙적으로 6개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는 신속예타 절차에 따라서 경찰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예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 부대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법적 내용을 보면 규정에 신속예타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저희가 신속예타 절차로 밟을 예정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상반기 이내에 이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병원 분원의 경우에는 소위 공모 절차까지 거쳐서 어느 지역이 설치 예정 지역으로 지금 확정이 됐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위 경찰병원 설립 관련 8조의3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를 그냥 ‘설립한다’로 개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그동안 예타 면제 관련된 이런 규정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특별법에서도 임의조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아니고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대안에서 마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분원 설치한다고 하면서 공모 절차까지 거쳤으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한다’라고 이 대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공모까지 한다고, 공모까지 다 했으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ですよ 신속예타를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에서는 ‘할 수 있다’로 규정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동시에 한꺼번에 드시네.

박범계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방금 그 조항 관련해서 경찰청장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예타, 지금 정점식 간사님 수정안이 합리적인 수도 있지만 경찰병원은 큰 재난에 경험이 많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트라우마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찰공무원들 또 소방도 그런 당면 현안이 있고 그런데 이게 예타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은 경찰공무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지방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한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면……

예타는 두 가지 아닙니까? 기간을 빨리하자는 것 하나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판단을 조금 약간 유보하자는 것인데 사실 기간이 당겨지는 것 말고 그 경제성 면, 이 논리로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라서 사실 이런 입법정책적인 정무적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거지요.

○박범계 위원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 의견에 저는 조금 걱정이 앞서요. 기재부가 예타를 그렇게 쉽게 잘 통과시켜 주는 그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찰병원 문제는 지난 정부 5년 내내 얘기

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이게 일종의 숙원 사업으로 넘어온 것인데, 이왕 선물을 주고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하려 한다면 이 예타 문제를 걸면 저는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그렇게 남기고요.

또 하나 4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것을 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율주행자동차 정보를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 그러면 일반 자동차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정보 가져다 쓰는 것 다 영장 끊어서 하지 않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지금 법무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범계 위원 수용하는 것으로?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꿨니까, 의견을 수용한다면?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삭제했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박범계 위원 그런 우려는 없어진 것이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박범계 위원 아무튼 경찰병원 문제는 오래된 사안이고 우리나라처럼 재난이 많았던 또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지방을 걱정하는 것을 떠나서 경찰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소방공무원들같이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된, 특히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배려,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에서 경제성 부분을 짚는다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해량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소방청 간사님 하고 장동혁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방청입니다.

기재부의 최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소병철 위원 지금 오늘 여기 이 수정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 법은 지금 강훈식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하시고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경찰공무원들을 생각해서 강훈식 의원님도 사실 여러 차례

이 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고 법사위 간사에게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당국에서 예타 문제 때문에 이게 진척이 없었다가 오늘 이렇게 이런 부분의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속제가 풀렸다 하는 마음도 들지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이, 이것을 삭제했는데 이 조항을 넣었던 취지가 상실되어 버린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염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강훈식 의원님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 봤어요. 역시 강훈식 의원님도 똑같이,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경찰병원 설립에 어떤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법안을 발의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국장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재정 당국에서도 고려해 주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소병철 위원 사실 지금 3항이 삭제됐지만 1항, 2항에 보면 부대의견의 똑같은 취지의 의견이 1항, 2항에 들어 있지요, 국장님?

예컨대 사전 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한다든지 사전 용역을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이미 1항, 2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타 제도하고는, 예타 절차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예타의 사전 절차입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예타 절차를 지금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도 경찰병원 건립이라는 목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8조의3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충분히 재정 당국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다짐을 다시 받습니다.

강훈식 의원님이 저한테 그것을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아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좀 이해적이다’는 말씀을 한 두 번 하셨어요.

원래 법률은 소급효를 두지 않는 게 원칙인 건 맞지요? 그러나 그 소급효라는 것은 불이익을 줄 때의 소급효를 금지한다는 것 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거의 실정법이 얼마든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소병철 위원 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계시는 국수본부장님은 후배이실 가능성이 많지만 이미 그만둔 분이…… 숫자가 여러 분이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한 사람이지요.

○소병철 위원 한 분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소병철 위원 선배이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굳이 그런 걸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선배.

○경찰청장 윤희근 예.

○소병철 위원 그러면 같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경찰 가족,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신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겁니다.

청장님의 기본 뜻은, 지금 더군다나 한 분밖에 안 되신다고 하니, 경찰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게…… 그 당시에 입법적인 불비였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소병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행안위에서 됐던 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원안대로. 그런 취지가 지금 청장님 뜻 아니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소병철 위원 지금 원안을 그대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다시 가야 되는데요?

삭제 수정의견에 지금……

○소병철 위원 아참,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정 의견이, 아까 실무진이 있어서 간사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동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정점식 위원 누가 동의를 안 해요?

○소병철 위원 행안위.

○정점식 위원 행안위가 만일 동의를 안 했다면 그러면 또 계류시키시지요.

○소병철 위원 예, 그 절차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게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행안부차관도 와 계신데.

○정점식 위원 아니, 행안위원회.

○소병철 위원 행안위입니다, 행안위.

○위원장 김도읍 경찰병원 말고 경찰공무원법.

○정점식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기본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뒤에 퇴직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명퇴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 각 군의 병과장 등의 사례를 참작을 해서 이런 특례를 둔 거지요. 똑같은 치안정감인 국수본부장과 다른 치안정감들은 다릅니다. 다른 치안정감들은 2개월 만에 퇴직을 할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임에도 2년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만에, 2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퇴직하는 치안정감의 경우에는 다른 보직과 마찬가지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국수본부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소위 명퇴수당을 그동안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해 왔는데 이번에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이 명퇴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게 계속된다면 국수본부장 자원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든 그런 특수성 등을 감안을 해서 명퇴금 지급을 하도록 특례를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이미 본인이 명퇴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보직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임기까지 마치고 퇴직금까지 받고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소급해서 명퇴금을 또 주겠다라는 이 법의 부칙은 기본적으로 명퇴 제도 그리고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소위 퇴직한 국수본부장에게 명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도 만일 이 법안을 의결한 행안위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저도 그러면 계속 계류시켜서 논의를 해 볼 것을 제의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재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장동혁 위원 지역이 소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격차와 의료 격차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이라는 경제성만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접근하면 그 지역격차는 절대 해소되지 않고 지역은 계속 소멸해 갈 겁니다. 국가가, 기재부가 관점을 달리하지 않으면 지역소멸은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경찰공무원들의 보건, 안전이나 복지에 관련된 문제기도 하지만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타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받을 수 없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도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태흠 충남도지사님 그리고 박경귀 아산시장님 그리고 또 이명수 의원님 여기 와 계십니다. 오셔서 지역의 이 병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선의에 기댄다면 우리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 없어도 예산 투입해서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법이 있어야지만 예산 투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의 선의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법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태껏 저희들은 기재부의 여러 모습들을 봐 왔지만 저는 이것 기재부의 선의에 기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신속예타 제도에 대해서도 규정과 내용에 맞으면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신속예타, 면제가 될지 안 될지도 저는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정확한 답변은, 규정 보고 그 규정에 맞으면 신속예타 하겠다는 말은 이 예타 면제 조항을 없애면서 기재부 담당자로서 나와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맞으면 해 주

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2020년에 경찰청의 타당성조사 시에 B/C 비율이 1.28, 550병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실시한 것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예타를 실시하든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그 경우에도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550병상 이상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입지 공모 선정 발표가 이루어진 게 2022년 12월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이것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할 수 있다, 예타 면제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 이미 병원 입지 공모 선정 발표까지 끝났는데 병원 설립할 수 있다, 그것도 설립한다라고 바꾸자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설립할 수 있다고 그냥 두자라는 그런 답변을 보면서 지금 이 병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굳이 최근에 통과된 다른 지역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소멸 우려한다, 대책 세운다, 지역격차를 해소하자는데 그리고 지역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 설립하자고 하는데 경제성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적어도 기재부는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지고 통과가 될 거라면 저는 오늘 국장님께서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6개월 안에 예타를 마치고 그리고 550병상 이상을 유지해서 신속하게 설계와 착공을 추진해서 이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도읍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사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송기현 위원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논의하거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인데 기재부의 국장님 오셔서 가지고 의견 진술하시고 또 정부위원들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상당히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국회가 기속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정도는 입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재부 국장님 의견 많이 들었고 그것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의사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간사님하고 말씀하셔서, 다른 여러 위원님이 원안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만큼 간사님들께서 협의가 되시면 원안으로 우선해서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들,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 간사님.

○정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또 소병철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게 원칙이고 본인이 해야 할 소명이지요. 책무지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의 의견이다. 기재부가, 정부 당국이 반대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의 입장이고 사실상 재정관리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저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과거 비용 대비 편익(B/C)만 따지던 데서 나아가서 이제 정책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관리국을 뛰어넘어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재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지를 두고 최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다. 어차피 공모 절차에 의해서 충남 아산에 경찰병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상 B/C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평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지금 실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간사님들하고 논

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서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정점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가 부대의견 이야기는 하지만 법사위 법안 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정관리국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예타를 실시하겠다는 하는 부분이 지금 다 녹취가 돼 있고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대의견을 대체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에다 부대의견을 넣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 정도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정 간사님.

○정점식 위원 국장님, 장동혁 위원님의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정점식 위원 그게 장동혁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의 의견이고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 지역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경찰병원 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경찰병원 분원이 이미 공모가 돼서 아산에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장동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경청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경찰병원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거점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다양하게 감안해서, 재정 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타조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병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마음 자체를 그렇게 먹어야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한다라고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예타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 부분을 설립한다로 변경하자고 내가 말씀은 안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면 다 예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가지고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 부대의견의 문제는 저희들도 기재부와 조금 상의를 해 봤는데 행안위 법안 자체가 ‘국가재정법 38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는데 원래대로 하려면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계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변경하면서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도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만하시고 다른 법률 좀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것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경찰병원 관련 법은 강훈식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발의자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사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도, 국가 전체 운영 취지에서는 필요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 수정안을 본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간사님의 수정안에 동의를 했던 것은, 발의했던 강훈식 의원님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지금 약속을 그렇게 해 주시고 과거에도 보니까 신속 예타로 해 가지고 처리했던 전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재정 당국에서 국가재정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기준도 똑같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법에 이것을 명시해 버리는 경우하고 사실상 신속예타를 통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똑같은 목적은 달성하지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법으로 이것을 명시해 버릴 때는 앞으로 우후죽순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호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점식 간사님도 재정 당국의 그 국가재정원칙을 존중하려고 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 사실 이게 법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우후죽순 들어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맞습니다. 지금 유사한 특별 직역 관련된 병원, 소방병원이나 보훈병원이나 대학병원들도 다 예타를 거쳤고 예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병철 위원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던 전례가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신속예타 제도가 사실상 저희가 2022년 11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도가 활성화된 부분은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병철 위원 그 제도 취지 자체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취지 자체를 감안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렵게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 그리고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 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수정안을 존중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유상범 위원님, 다른 법안 토론하지요.

○유상범 위원 경찰병원 문제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바로 다른 법안……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최한경 국장님은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47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계류가 됐었습니다, 소방청장님.

○소방청차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과 이견 해소를 다 하신 거지요?

○소방청차장 김조일 예, 기재부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수정안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으로 마무리된 거지요?

○소방청차장 김조일 예,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재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소방청차장 김조일 아니요, 저희들이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뒤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에 동의하고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7항, 4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6항, 38항, 39항, 42항, 4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0항, 45항, 4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3항, 46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사님들, 시간이 지금 두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서 회의실 환기를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9747)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4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53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3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헐박이나 페이스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상시적 자체점검 의무 부여,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조제1항은 지급정지요건에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부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체·송금·출금 지연 및 일시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에 지급정지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받은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지급정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조의7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

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 기본법안 제6조에 따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의 업무 범위가 동 개정안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익자가 환수절차 진행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재정지급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행정처는 허위·과다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0항까지, 52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희완 보훈부차관님,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제53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익위 부위원장님 담당이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부위원장입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8조의2 신설로 처벌하는 행위 중에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그 처벌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견이 제시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추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법원과 재검토를 통해서 법률안을 좀 정비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공공재정지급금 중 보조금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재정환수법과 보조금법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형량이 센 규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에 따라서. 그래서 법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적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으로 해서 10년 이하가 되고 나머지 법들은 저희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3년 이하가 되며 또 기타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적용에 있어 가지고 전혀 충돌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약간의 적용에서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 해소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법원행정처와는 이견 해소를 정리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계류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8항부터 52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3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4.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505)

5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141)

5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9)

5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38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54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부터 5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가의 사진 활동 결과물은 사진작품이므로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보호 대상은 사진작품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장르 간 융합화 추세에서 사진 장르를 기존 미술진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규정할 실익이 낮고 사진은 시각예술의 한 장르로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진흥법을 통해 지원 중이므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예산 중복 투입이나 예산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원시설업의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의2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시 오락 정도로 하는 게임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 홀덤펍과 같이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카지노 영업 종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영리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소유자 등이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중대한 결함’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전병극 문체부1차관님 출석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54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지만 과연 이 법안을……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굳이 여러 예술 분야 중에 이렇게 사진 장르만 따로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될 실익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법체계상 문제를 지적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상임위에서 이 관련 법이 한 세 번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상임위에서도 제정 실익이 없다 그래서 기존의 시각예술 틀 안에서 사진진흥 정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정의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의를 했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차관님, 이 검토의견은 기획재정부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문체부 모두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 기재부 의견은 아마 법사위 의견 검토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문체부와.

○**조정훈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재부와 문체부, 관련 부처가 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토론하기보다는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든지 또는 2소위로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차관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견 내는 것은 재정적인 중복 이런 이견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게 지금 우리 문체부는 수많은 사진작가들 입장을 대변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내용의 법이 과거에 문체부하고 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 이상현 의원실하고 문체부가 협의해서 만들었고 당시에는 문체부도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달라진 것에 대해서 사정 변화가 납득이 갈 만한 거면 충분히 그 새로운 사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화된 게 없는데 지금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진흥이 가능하니까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문체부차관님 입장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체부는 지금 문화체육인들 위해서 항상 그 편에 서서 대변을 해 주셔야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존립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칼에 그냥 이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버리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안

들니까? 뭐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예, 하십시오,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이 3차까지 진행되면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의된 바는 없고 제가 세 번 논의를 진행했고 계속 마지막 4차, 마지막 논의에서도 이렇게 시각예술에서 사진만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법적 체계 측면에서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소병철 위원** 아니, 차관님, 잠깐 제가 말씀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소병철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 그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관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사진예술인들은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부처는 문체관광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맞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차관님이 지금 오히려 이것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버리면……

저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어떤 합의 처리하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차관님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 예술인들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게 차관님뿐인데 차관님이 이렇게 예술인들을 단칼에 그냥 불필요하다 하셔서 버리면 대한민국 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의지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위원님, 단칼에 정부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시각예술의 중요한 분야가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충분히, 충분하지는…… 그것은 또 사진계에서 봤을 때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이라든지 진흥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병철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문체부에서 이것 합의안을 만들었습니까, 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합의한……

○**소병철 위원** 협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협의는 계속했는데 협의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소병철 위원 아니, 그 당시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상헌 의원실하고 문체부가 협의해서 만들어졌던 안이고 당시 문체부에서도 이안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뀔 수 있어요, 입장이. 그런데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차관님, 예술인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진가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런 적은 결코 없었고요. 계속 논의 중에, 논의를 한 과정에 있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소위나 또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차관님,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의 창작이라든지 진흥 이것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조수진 위원 당연한데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술에서 사진만을 분리하는 그런 작품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술의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래서 시각예술이 빠르게 장르 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사진 장르만 이렇게 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실익을 제가 계속 제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진만을 떼서 어떤 법안을 만들 경우에는 또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장르의 개별법 제정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점을 걱정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연쇄적으로 그런 우려가 지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동의합니다.

○조수진 위원 그리고 이 법안이 이런 내용적인 것도 조금 저희가 다시 손을 봐야 되지만 더불어 민주당 소위에서 단독 의결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표결 처리되

었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문체위에서 단독 의결이 됐고 또 공청회도 생략이 됐어요. 이렇게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2소위로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5항, 57항, 5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4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5)

6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6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6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6)

6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4)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7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425)

7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7)

(17시5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59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부터 75항 검역법 개정안까지 17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71항, 72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한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 대하여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작성 대상에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 있는 사람이 추가되고 뇌사자의 장기 등 적출 사실을 검찰청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와 연계된 관련 조문에 대해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

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 제29조의3제4항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기관의 편익에 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유죄판결 확정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도 같은 취지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및 치료대상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치료대상자로부터 치료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치료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1조의2제5항과 관련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치료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재생의료기관이므로 동의서 사본 발급 관련 주체를 재생의료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2조의2제5항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그 심의·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2에 대하여 재생의료 산업을 위한 개별 임상연구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양 부처가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을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신고, 조직은행·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13조의3제2항의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식약처 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로 정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가 동물대체시험과 동물시험 등을 포괄하는 OECD 국제시험표준의 대내외 이행·제도·운영 총괄기관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 제2조제2호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은 분야별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인허가권, 정보 및 전문성을 보유한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의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증·제도화·국제기구에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 제6조의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및 안 제12조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두지 않고 공동 운영하고 소관 부처에 분야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61항, 66항, 73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59항, 62항, 63항, 65항, 68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약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72항 심사와 관련하여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님, 74항 심사와 관련하여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님, 이명현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순서대로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먼저 65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 관련해서, 1차관님 소관이신가요? 2차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제가 담당입니다.

○전주혜 위원 1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이 법이 특별시, 광역시 또 도 이런 곳에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종전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이것을 큰 규모의 지자체는 의무규정화하고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맞습니다. 광역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저는 이 법의 일부 취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특별시 또 광역시나 도의 어떤 재량권이 전혀 없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 상임위 판에서는 광역시는 ‘둔다’로 하고요 또 시군구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월요일 날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는 현행 ‘둘 수 있다’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는 안 돼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기재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관련해서 협의를 그동안 안 거치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74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 식약처를 비롯해서…… 식약처도 좀 이견이 있으신 것 아니겠어요,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부처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한번 계류시켜 주시면……

○전주혜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부처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 해소를 위해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 63항하고 69항은 그러면 부처의 이견을 다 해소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안이 다 반영된 거지요?

63항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견이 있었지만 이미 해소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63항 영유아보육법은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거고요.

○장동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임위에서 해소됐던 내용인 것 같고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법사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장동혁 위원 69항은 지금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해서 반영해 놓으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71항 약사법은 아마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을 텐데요 이 수정사항에 반영된 대로 이것을 반영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6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차관님 소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제 겁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소위 판결문 송달과 관련해

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견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모든 아동학대범죄 판결문이 보건복지부로 송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의 협의 등을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면, 계속 협의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72항과 관련해서, 72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수정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와 추후 협의를 해서 21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둔다’라고 했던 것을 ‘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약사법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지난번 이견은 원래 안에는 약사에 관한 업무 이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제약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까지 적용되는 것처럼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는 그런 법무부 이견이 있었던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맞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래서 그 이견을 받아들여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장소를 약국으로 한정하고 업무 범위도 조제, 복약지도로 제한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버스 핸들을 들고 있을 때는 보호 대상이지만 퇴근해 가지고 휴게실에 있든지 하는 분까지 보호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똑같은 취지로 이번에 약사법 수정안을 만드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여기 지금 이게 전문위원님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자료가 다 배부가 되었고 조문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통합지원법,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기 부처 간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거요. 그것은 복지위하고도 협의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의 하단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하고 서로 논의한 내용을, 발의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사전 설명을 드렸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대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분 중에서 한 의원실은 ‘둔다’는 것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시고 나머지 의원실은 이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송기현 위원** 발의 의원님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되고 상임위 차원에서 동의가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문제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동의가 됐냐고 제가 여쭙보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상임위원장실하고 간사실은 다 논의를, 이견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께서 전담조직은 이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도읍** 논의가 됐는데 개별 의원이……

○**유상범 위원** 다 된 거예요?

○**송기현 위원**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지는 않았는데 상임위원장, 간사 간까지는 다 확인을 했다는 거지요.

○**송기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지요?

○**소병철 위원** 예, 의사일정 제72항에 대해서입니다.

소병철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둘 수 있다’, ‘둔다’ 큰 차이가 없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차관님께 그때 한번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있으셨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실태가 ‘둔다’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입장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는 행안부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둘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상임위에다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뭐랄까, 행안부에 좀 더 얘기를 해서 확고하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담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지난번 회의 때 하고 지금 입장이 바뀌셨네요. 지난번에는 ‘둔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둔다’로 말씀을 드렸고 ‘둘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상임위에 다시 여쭙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그것까지만 되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이 발의 의원님들 중에도 결국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거네요, 보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법사위 법안 심사 관례를 보면 수정의견이 있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우리 법사위 간사님들과 서로 의논하여서 양해가 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되지 발의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72항 관련해서는 말씀들은 게시지만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아직 안 계십니다.

○**송기현 위원** 일단 소관 상임위 간사하고 간사님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도읍** 그 관례대로 간사 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지금 이기일 1차관께서는 아마 동의를 했다고……

○**소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또 저희 쪽에서 확인할 때는 다른 의견……

○위원장 김도읍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동발의에 이름 올린 개별 의원님들한테는 이게……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법안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발의자가 일곱 분이 계신데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은 동의를 하고 남인순 의원만 지금 또 다른 대표……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게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 간 협의가 되면 끝나는데……

○정점식 위원 맞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해당 간사가 확인이 안 돼요.

○정점식 위원 아니, 공동발의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김도읍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그렇게 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9항, 62항, 63항, 6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0항, 61항, 64항, 66항, 69항, 70항, 73항, 7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1항, 72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소병철 위원 72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7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5항, 67항, 72항, 74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69)

7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제출)

7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8시1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76항 사립학교법 개정안부터 7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78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국립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협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아닌 해당 학교의 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7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오석환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6항, 7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8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
8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4.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
8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시12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79항 먹는물관리법 개정안부터 87항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대안)까지 9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86항, 87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5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와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마련하는 시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도의 적용례를 둘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에 관한 심의·결정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 등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48조의3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어 종전의 조사단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 인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 제17조제1항에 구제급여의 지급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제51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지급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38조는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대한 두 번째 불복 절차인 재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기존 법률에 따라 두 번째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개정 법률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에 발급된 석면피해의료수첩이 법률 개정 이후에도 유효함을 명시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제도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결정 업무가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되므로 환경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수정하며 소관 사무에 건강피해 조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심사와 재결을 추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첫째,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정 상대방에 대한 통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조정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서 접수 시 조정 상대방에게 통

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조사관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와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재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관과 관계전문가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5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위원회의 업무 중 구제급여의 심의·결정 업무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환경책임보험 관련 사항의 심의·결정 업무는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을 각각 환경보건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위원회별 소관 업무 분장 계획을 반영하여 부칙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폐지와 관련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환경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하천법 관련해서 수정안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요. 거기 수정안 내용 보면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받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제3조는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책무에다가 이걸, 그러니까 국가 등의 책무에 이걸 넣는 게 타당한가요, 규정이지?

○환경부차관 임상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 논의가 많이 있으셨습시다마는 이 개정안의 취지가 휴가철에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 부분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취지를 좀 좁혀 가지고 국가의 전반적인 친수공간 조성 의무가 아니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요 차원의 예방책과 단속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3조 1항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고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하부내용으로 들어갈 내용이지 그것이 국가 등의 책무, 목적에 이 규정이 들어간다는 건 체계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74조 2항에 보면, 여기 국가의 책무에 보면 불법 점용 등으로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규정 자체가 이 내용을 좀 더 일반화한 규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굳이 여기서 넣을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74조 2항에다가 이 관련 규정을 넣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저희 환경부도 최초의 의견은 그랬습시다마는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국민 여가 공간 제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책무라고 적어 가지고 전체적인 큰 목적 조항을 넣었는데 그 하부 시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거기에다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74조 2항에 보면 여기 하천 관리 상황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 내용을 조금만 수정하면 이 수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법을 체계의 정합성이 좀 되게 만들어 규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유상범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견해가 맞다 틀리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환노위에서 다 합의해 가지고 수정안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정점식 간사님께 말씀드려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그리고 당시에 또 나머지 2개 법들과 해서 정책적으로 통과를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환노위의 입장 그리고 또 그 뒤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존중해서 수정안까지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통과를 좀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물론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환노위에서 이 법안 자체를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점을 감안해서, 또 그 이후에 법사위 단계에서 반대하던 기재부와 또 서로, 대표발의한 의원실, 기재부, 환경부가 합의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으니까 수정안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조금만 양보를 해 주시면…… 항상 존경합니다.

○유상범 위원 한 말씀, 딱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5분 드릴게요.

○유상범 위원 제가 법사위에 오면서 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일관된 게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든 법률이 특별법을 통해서 예외를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 자꾸 일반화되고 있는 이것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라면 누가 딱 읽어 봤을 때 이 법에 이런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적어도 최소한의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법을 딱 보면 큰 목적에 대한 원칙, 목표를 적어 놓고 그 밑에다 느닷없이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규정이

탁 들어가 버리면 이 법을 보는 사람들이 그 법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나라는 말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법을 빨리 만들고 또 상임위에서 그 법체계의 정합성이나 또는 자구 한 자 한 자에 대한 검토 없이 늘 일방적으로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법을 몰아치듯이 만들다 보니 이제는 1년에 거의 20건 정도 위헌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0건이 넘어간 지는 벌써 몇 년 됐고요.

이런 식으로 입법 과잉이 이루어지는 것, 안 되면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극히 예외적이 돼야 되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난번 논의하고 그 이후에 추가 논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제 뜻을 접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고민 좀 합시다, 박범계 위원님. 같이 고민 좀 해 가지고…… 위낙 그래도, 제가 다른 걸 떠나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뜻이 다른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간간히 말씀하실 때 그 법안에 대한 입장, 의견 또 철학적인 논의 이런 것은 제가 늘 존중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난번에 전체회의에 계류했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는, 이 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긴급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절차적으로 생략을 해 가지고 구조를 빨리해 주자, 구체 구조를 빨리해 주자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민생법인데 이게 다른 법하고 바터가 된다는 것은 정말 법사위, 진짜 저희들이 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 지적처럼……

박범계 위원님, 빨리 쳐다보지 마시고 하천법 74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개정안은 3조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이것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조치 주체도 하천관리청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도, 관리 주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방이 개입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강구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74조에 보면 더 명확하고 더 강력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굳이 개정해야 된다? 만약에 이 법을 적용하는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볼 때 도대체 국회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님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예,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유상범 위원님의 법리적인 말씀에 저도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두 분께서 고견을 주셨으니까 속기록에 그 취지가 그대로 남고 또 차관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과 유상범 위원님 말씀한 것 경청하셨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소병철 위원 그 정신에 맞춰서 앞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 통과를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들,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대로 통과하겠다는 게 간사님들 협의 사항입니까?

○정점식 위원 (고개를 끄덕임)

○소병철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74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정안을 보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합당합니까? 이게 또 혹시……

소병철 간사님도 한번 봐 주시지요.

○소병철 위원 봤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74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불법행위 등으로’ 이러면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등’이면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74조 체계에 맞춰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소병철 위원 3조 2항은 국가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4조 2항은 하천관리청에 구체적인 업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괜찮겠습니까?

○소병철 위원 예,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 뭐……

말씀하실 의욕을 잃었습니까, 유상범 위원님?

○박범계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도읍 예,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체계 정합성에 대한 우리 유상범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 대표발의한 원안에는 하천의 불법적인 점용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천구역을 어떻게 국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 더 주안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환경부가 치수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그 밖에 기재부의 걱정처럼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입법정책적인 것보다는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이 더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근본 원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은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기재부는 거기에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그 조항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종래에 늘상 보는 원안과 비교해서 입법취지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상범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현재 법안, 아까 소병철 간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약간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74조인가요, 그 부분으로 충분히 이 법의 최대한의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목적은,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지요.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통과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법안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때문에 궁금해서 차관님께 여쭙보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도읍 예, 토론하십시오.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차관님, 지금 현행법에도 재난지역에 긴급 임시조치하는 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난지역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돼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면제가 돼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그런데 원상복구에 플러스해서 개선복구라는 개념이 행안부에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흠으로 만들어진 제방의 일부를 시멘트를 좀 쌓아서 견고하게 해서 다시 똑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걸 개선복구라고 하는데 개선복구 같은 경우에는 영향평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선복구 재해가 2022년 같은 경우에 36건이었는데, 재해 중에 개선복구를 해야 될 게 36건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건 되지는 않지만 그 조항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림이 조금 떨어져서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복구하는 데는 환경영향평가가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개선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자는 취지고.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재난이 발생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데에다가 이렇게 복구라는 명칭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 막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원안에는 없었습니다. 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적으로 개선복구하는 사업에도 기본적인 환경영향성 평가를 해서 그걸 환경부장관한테 넘겨주면 환경부장관이 보고……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양 기관 간 교차해서 스크린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하는 우려는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폭넓게 변경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조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좀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원상복구와 개선복구를 할 때는 아주 엄격한 조건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개선복구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명확하게.

○**환경부차관 임상준** 지금 그렇게 조항이 돼 있는 겁니다.

○**송기현 위원** 돼 있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런데 그 법적인……

○**송기현 위원** 지금 긴급재난지역에서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특별재난지역에서.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서 원상복구는 이미 면제가 돼 있고 면제가 안 되는 개선복구 그 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 조항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개선복구에만 한정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의…… 광범위한 건 아닙니다.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참고로 하천법은 처음 개정안, 우리가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처음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흘러흘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 조항으로 됐는데 첫 개정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은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긴급한 안전 확보 목적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구역을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흘러와서 국가의 책무 조항으로 변질됐는데…… 통과시켜야 됩니까?

○**소병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

○**박범계 위원** 개정안은 제대로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헌법에 들어갈 내용

을 하천법에 기본권으로……

○소병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적절히 지적한 취지는 정부부처에서 존중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권철승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도읍 법안 관련해서요?

○권철승 위원 예.

차관님, 환경분쟁 조정법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회 이름을 조정하고 피해 구제하는 걸로 사실 업무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서 그 구제급여를 여기서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조정하는 것하고 결정하는 것을 다 같이 하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데하고는 약간은 체계가 좀 다르고 아마 선례도 이런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결정하게 되신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뭐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일단 정책적인 문제기는 한데 조정과 중재를 분리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님 계셨던 중기부가 그런 형태고요. 또 권익위원회나 노동위원회 이런 데는 조사하고 중재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책적 판단의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한군데에 신청을 하게, 국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이 제일 큼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중기부 말씀하셔서 그런데 기술침해 행정조사할 때 보면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저도 한번 모아 보려고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분리돼 있는 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원래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라고 하는 게 당사자의 의견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시면서 이 제도의 어떤 장단점 같은 것을 환경부가 선도적으로 정리를 해서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게 전 사

회적인 문제고 또 관련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 정부에서 아주 이걸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면, 이 시스템을 정부에 확산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그렇게 유념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서 너무 편의적으로 운영하실 게 아니고 좀 시범적인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 자체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도 환경부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9항부터 85항까지 및 8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6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 철 승	김 도 읍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의 겸	박 범 계	박 용 진	박 주 민
소 병 철	송 기 현	유 상 범	이 탄 희
장 동 혁	전 주 혜	정 점 식	조 수 진
조 정 훈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전 문 위 원	한	석	현
전 문 위 원	박	동	찬
전 문 위 원	이	화	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	한	경
교 육 부 차 관	오	석	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 차 관	박	윤	규
국 방 부 차 관	김	선	호
행정안전부 차 관	고	기	동
자 연 재 난 실 장	김	광	용
자 치 분 권 국 장	여	중	협
국 가 보 훈 부 차 관	이	희	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	병	극
보건복지부 제 1 차 관	이	기	일
제 2 차 관	박	민	수
환경부 차 관	임	상	준
환 경 보 건 국 장	황	계	영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진	현	환
제 2 차 관	백	원	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	기	웅
인 사 혁 신 처 장	김	승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경 찰 청 장	윤	희	근
소 방 청 차 장	김	조	일
질 병 관 리 청 장	지	영	미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	홍	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정	승	윤
검 사 무 처 장	김	소	영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이	명	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4. 1. 23. 이주환·백종현·김성원·김학용·
황보승희·김용판·구자근·정운천·정동만·
김형동·金炳旭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제34158호	2024. 1. 23.	법무부